# Dabble's Legal Protection

By EOSix

## 1. 저작권을 증명할 강력한 증거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Dabble 플랫폼 자체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되고, Dabbler의 글들은 "어문저작물"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저작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느냐에 따라 또 다른 "어문저작물", "사진저작물", "미술저작물"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2차적저작물).

#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2. 음악저작물
-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 7. 영상저작물
-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39조).
- 한국저작권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①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 1.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국적·주 소 또는 거소
- 2.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 저작권은 그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어떠한 절

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하지 아니합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따라서, 저작권은 "저작권 등록(저작권법 제53조)"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만, 저작권의 발생만으로는 저작권 보호가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저작권 등 록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등록을 하면, 해당 창작연월일에 그 등재된 창작자에 의해 그 저작물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추후 분쟁발생 시 해당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완화됩니다(입증책임의 완화).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입증책임의 전환),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침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있습니다. 즉, 등록된 저작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각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을 손해액으로 하여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다만, Dabbler가 Dabble을 통해 작성한 모든 저작물들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할 수는 없는 바, 추후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의 대상이 된저작물이 Dabbler가 창작한 것임을 해당 Dabbler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때 블록체인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특성을 활용하는 경우 Dabble은 작성된 글의 창작연월일과 이후 위·변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제공할 수 있고, 이는 강한 증거능력을 가지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Dabbler의 상대방측이 이보다 먼저 저작물을 창작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2. 그 외 산업재산권법 관련
- (1) Dabble을 통해 특정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경우(공지)에는 해당 시점 이후로 그 아이디어는 신규성을 상실하여 자유기술이 되는 바, 추후 누군가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을 담보하는 특허권 취득을 방지할 수 있고,
- (2) 특정 표장으로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상표적 사용)에는 상표의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권 불사용취소심판을 면하거나 또는 타인의 상표출원 전의 사용이라면 해당 상표권에 대한 선사용권이 발생되는 바,
- : 블록체인에 기반하는 Dabble의 특성을 이용해 다양한 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2. 상표법에 의한 보호

### (1) 상표법의 보호 대상

-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u>타</u>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개발된 게임명이 "Match-3"에 해당하고, 이러한 명칭(표장)으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경우 "Match-3"라는 표장이 해당 제품의 상표로서 기능하므로, "Match-3"를 상표로 하고 "기록된 컴퓨터게임프로그램"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출원 후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에도 개발한 게임 내 캐릭터인 "A"를 표장으로 "장난감 총"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A"라는 표장이 해당 제품의 상표로서 기능한다면 "A"를 상표로 하고 "장난감 총"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출원 후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 또는, "A"라는 표장이 장난감 총의 상표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장난 감도매업 또는 장난감소매업을 영위하는 서비스표로 기능한다면 "A"를 상표로, "장난감도매업" 또는 "장난감소매업"을 지정서비스로 출원한 후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 (2) 상표법에 의한 효력

- 상표권자는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그리고 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고 있는 상표가 있다면, 제3자가 동일·유사한 표장으로 동일 · 유사한 지정상품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배제효도 발생합니다.

#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7.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11.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 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 (3)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

- 상표는 특허나 실용신안과 달리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동일·유사한 선행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기능할 정도로 알려진 상태가 아니라면 출원하여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 (4) 해외에서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의하면 각국 상표 독립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만 등록상표로서 보호되고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출원 또는 등록한 상표를 해외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외국의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만 합니다.
- 그 절차로는, 각 국가별 통상의 상표출원을 통해 등록을 받는 방법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상표의 국제출원을 통해 등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통상의 상표출원 절차와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출원 절차의 비교

